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1년 12월 일
제 출 자 : 김영래, 전수곤, 배재만
구교강, 김성우, 도희재, 황숙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나.「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개정, 임시회 소집 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3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7 ~ 12. 21

5. 관련법령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를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성주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 ---------- ---------- ---------- ---------- ---------- ---------- ---------.
제3조(개최)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후단 신설>	제3조(개최) ① ---------- ------.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신 설>	② 의장은 성주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